

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 안 번호	401
----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4. . . .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□ 개정사유

학교신설, 학과개편, 학교이전, 소규모학교 통폐합, 도시계획에 의한 학교 폐지, 택지개발지구의 지적정리에 따른 지번부여, 도·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으로 인한 교명 및 주소가 변경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신설 학교 (청주시 충북공업고등학교외 3교) : 덧붙임
- 학과개편에 따른 교명변경 학교 (제천군 제원고등학교) : 덧붙임
- 학교이전으로 주소변경 학교 (청주시 교동국민학교) : 덧붙임
- 소규모학교 통·폐합
 - 본교에서 분교장개편 학교 (제천군 대전국민학교외 9교) : 덧붙임
 - 본교폐지 학교 (제천군 청풍고등학교외 3교) : 덧붙임
 - 분교장폐지 학교 (충주시 성남국민학교 동신분교장외 27교) : 덧붙임
- 도시계획에 의한 학교 폐지 (제천시 청전국민학교) : 덧붙임
- 지적정리에 따른 지번부여 학교 (충주시 연수국민학교) : 덧붙임
- 도·농복합형태의 시설치 (충주시, 제천시) : 덧붙임

□ 제안근거

- 교육법 제82조 및 교육법 제85조
- '95. 국·중·고등학교 학생수용계획에 의한 학교신설 및 소규모학교 통·폐합 계획
-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(법률제4, 774호, '94. 8. 3.) 제4조, 부칙 제1조 및 제2조

□ 조 례 안 : 덧붙임

□ 참고사항

-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골자 : 덧붙임
- 신·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-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심의·의결 공문서 사본 : 덧붙임
- 충청북도의회 부의안건 공고문 사본 : 덧붙임
-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- '95. 학생수용계획에 의한 학교신설 계획안 및 소규모국민학교 통·폐합 기준 : 덧붙임
- 예산상황 : 해당없음

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1], [별표3] 및 [별표4]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,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로 인한 위치변경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단, 청풍고등학교는 1995학년도 재학생의 졸업학년도 까지 존속한다.